

『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,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, 구미시 4H활동 지원 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(안 제2조)
-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심의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- 기 타 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규정한 4-H활동 지원 기금의 일몰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, 심의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-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 중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